제28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예 산 재 정 과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5			•	
발	의	자	김정도	의	원	외	1인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김정도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25. . .

발 의 자: 김정도·장미경 의원(2인)

찬 성 자: 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태

김원섭·김춘남·이상호·이지연

장세구·정지원·허민근 의원(11인)

1. 제안이유

구미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구미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나. 정산 지침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다. 정산 보고 및 정산 검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라. 반납 처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마.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64조, 제66조, 제66조의2, 제73조
-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제26조, 제27조
- 3) 「지방자치법」 제150조
- 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 나. 부서검토: 예산재정과 의견제출(붙임)
- 다. 예산조치: 해당없음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구미시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구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 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구미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 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말한다.
- 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위탁 또는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 비 모두를 포함한다.
- 5. "정산"이란 공공기관이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입에 대한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

- 을 말한다.
- 6. "반납"이란 공공기관이 출연금 등의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의 투명한 관리와 명확한 정산을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출연금 등의 결제용 전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정산 지침) 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 (이하 "정산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담 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 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 2.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 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 4.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 지침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지침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 및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정산 보고 및 정산 검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 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 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반납 처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 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하여야 한다.
- 제9조(의회 보고) 시장은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시 의회 소관 상임

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장려혜택 제공 등) 시장은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 등으로 출연금 등의 예산을 절감한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 자체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의 장려혜택을 제공하거나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산 및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8조의 규정은 2025 회계 연도 결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2024 회계 연도 결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계법령

□「지방공기업법」

- 제35조(결산) 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 ②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4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 제66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6조의2(예산·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예산 및 결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 ② 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제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공통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제73조(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6조(회계연도) 출자·출연 기관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 제19조(결산)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수익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검사・보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업

- 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 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마다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 1.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
-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 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1. 조직 운영과 정원 ·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 2. 예산의 편성ㆍ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 3.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예산재정과

조 례 명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 검토 사항

- 근거 법령
 - ■「지방공기업법」제35조, 제64조, 제66조, 제66조의2, 제73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제26조 제27조
 - ■「구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 주요 사항

-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안 제5조)
- 출연금 등의 정산 지침(안 제6조)
-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구미시의회 보고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검토 결과

·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 및 반납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

• 기대효과 :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전출금 등에 대한 집행 기준 마련 및 정산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

•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 문 제 점 : 해당사항 없음